

#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nd Directions for Reform

장 우 권(Woo-Kwon Chang)\*\*

박 주 현(Ju-Hyeon Park)\*\*\*

### < 목 차 >

I. 서론	III.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정	1. 법적 위상과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주제
1. 1차 학교도서관진흥법안	2. 업무주체
2. 1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3. 전문인력 배치
3. 2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4. 내용과 범위 설정
4. 3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IV. 결론

### 초 록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사서교사, 전문인력

### ABSTRACT

School library is the place of educational meeting and cultural communication.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bring about library law's unity absence, the subject of works, arrangement standard of professional personnel, establishment of contents and scope, and matter of qualification and so 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established of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a proposal bill, a purpose bill, and the main contents. As a result it is to propose revision of bill after analysis of the question enacted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Keywords: School library, Libraries Act,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Teacher-librarian, Professional personnel

\* 이 글은 2013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학교도서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제1저자)

\*\*\* 광주 신가초등학교 교사(Corresponding author: parkjuhyun12@hanmail.net)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13년 8월 14일 • 최초심사: 2013년 8월 29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2일

## I. 서론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 만남의 장이며 이러한 만남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즉 학생들은 사서교사를 통해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물론 읽고 싶은 주제의 도서도 추천받을 수 있다. 교사들은 교수활동을 지원받으며 교사독서동아리를 통해 독서활동에 참여한다. 학부모는 학교도서관 자원봉사활동이나 독서회활동을 통해 만남을 갖는다. 독서문화활동과 정보활용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도 이바지하는 공간인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 공간의 장이다.

ASLA 2000,<sup>1)</sup> IFLA/UNESCO(2000), IFLA/UNESCO(2002)<sup>2)</sup>에서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AASL(1993)의 '학교도서관 정책성명서(AASL Policy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직원의 자격조건을 사서임과 동시에 교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에게 '교사'와 '사서' 자격증 모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사서는 당연히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sup>3)</sup>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학교사서가 가르치고 교사와 학생이 학습하는 교실이다.<sup>4)</sup>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3년부터 추진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①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②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③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④학교도서관 지원 민간협력체제 구축)은 학교도서관을 양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다.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04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제안되고 2007년에 「학교도서관진흥법」<sup>5)</sup>이 제정된다.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 1) ASLA(Australi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Policy Statement - School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sla.org.au/policy/bill-of-rights.aspx>〉 : *Joint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and Teacher Librarians*.  
〈<http://www.asla.org.au/policy/Joint-statement.aspx>〉 [cited 2013. 9. 3]
- 2) 학교도서관 지침[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chool Library Guidelines 2002*].  
〈<http://www.ifla.org/publications/the-iflaunesco-school-library-guidelines-2002>〉 [cited.2013. 9. 3].
- 3) 송기호,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 개정3판, 한국도서관협회, 2008, pp.305-306.
- 4)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AASL). *Position Statement on Instructional Classification*, 2010.  
〈<http://www.ala.org/>〉 : 송기호, "사서교사 자격 제도 및 직무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3권, 제4호(2012), p.165.
- 5)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8677호, 2007. 12. 14., 제정]이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제정됨.

사서교사의 배치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사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정규직을 양산시켰다. 또한 사서교사 등의 배치에 관한 임의규정은 사서 무자격자도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으로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의 문제,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기준과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학교도서관이 발전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11,506개관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설치율이 98.37%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하는 주체인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비 5.89%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사서는 35.34%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이외에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서실무사 등으로 불리는 사서무자격자들도 학교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서무자격자들의 학교도서관 근무는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과 운영에 자격이나 직위가 상관없다는 인식을 확대시켜 학교도서관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사서교사의 교권을 추락시켰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무 배치, 업무범위, 교육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규정하여 사서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서의 직무를 정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을 살펴보고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정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제정과정에서 지금까지 소관위원회에 4회 상정되었다. 상정된 의안 중 1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2건은 소관위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으며 1건의 의안은 소관위 계류 중에 있다. 2004년에 제안되어 2007년에 공포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sup>7)</sup> 소관위에 상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제안내용, 개정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2012). 2012 한국도서관연감과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의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함. 2012. 4. 1. 기준으로 전체 초중등학교수 11,696개(분관), 학교도서관수 11,506개관, 사서교사 689명, 비정규직사서 4,134명을 기준으로 함.  
 7) [시행 2008. 6. 15.] [법률 제8677호, 2007. 12. 14., 제정] 이후 모두 자체 개정은 없고 타법개정. ①[시행 2008. 6. 15.]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②[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0호, 2012. 2. 17., 타법개정], ③[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1. 1차 학교도서관진흥법안

2004년 7월 14일 김재윤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17대 제248회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안번호 170193호)』이 제안되었다. 학교도서관 설치의무와, 업무, 지도감독,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학교도서관이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기본 시설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이 제안되게 된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었음에도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따로 제정한 이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문화관광부, 제안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소관부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도서관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 (제안이유)

학교도서관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본시설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설정된 학업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평생학습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사로 하여금 수업전략의 향상과 자기개발을 장려하는 등의 역할을 그리고 지역사회차원에서는 평생교육의 매체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등 그 존재 가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으로 각종 도서관에 관한 일반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시설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자는 것이었다.

#### (주요내용)

- 1)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교,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등의 전담인력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도서관을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과 이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
- 3)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4) 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지역실정에

8) 김재윤 외.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안번호 170193호). 국회교육위원회, 2004. 7. 14.

-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6)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 7) 학교에 학교도서관진흥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맡도록 함(안 제10조).
  - 8)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응하는 자체경비를 마련하여 투자하도록 함(안 제11조).
  - 9)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및 이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을 두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10) 시·도교육청, 일반도서관 그 밖의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 11) 독서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 12) 개인 및 단체 등이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위 법안은 <표 1>과 같은 입법 과정을 거쳐 공표된다. 그러나 법안이 제안된 취지와는 다르게 수정되어 가결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전문인력 배치와 전담부서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부분<sup>9)</sup>은 추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게 한 이유가 된다. 이때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표 1> 학교도서관진흥법안 공표 과정

의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학교도서관진흥법안		김재윤의원 등 14인		2004-07-14	
교육위원회 심사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04-07-16	2007-09-17	2007-09-17	수정가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07-09-18	2007-11-21	2007-11-21	수정가결		
관련위원회 심사 (문화체육관광위)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비고		
	2004-07-16	2005-02-18	2005-02-23			
본회의 심의	상정일	의결일	회의결과	공포일		
	2007-11-22	2007-11-22	수정가결	2007-12-14		

9) ①교육전문직원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②학교사서 → 사서직원 ③교육감 소속의 발전위원회× → 발전위원회○  
 ④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지원할 수 있다. ⑤교육감은...경비를 편성·지원하여야 한다 →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⑥전담 부서와 교육전문직원을 두어야 한다. →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⑦사서교사...두어야 한다. → 사서교사... 을 둘 수 있다. ⑧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설치할 수 있다. ⑨학교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 2. 1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6일 이찬열 의원 등 19명은 제18대 제296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676호)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사서교사 등을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관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임기만으로 폐기된다. 이찬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0)</sup>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2010.10.20)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1년도 사서교사 임용계획은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었다.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사서교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안 제12조제2항).

또한 개정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서교사 등이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배치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재정지출은 불가피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sup>11)</sup> 1팀은 2010년도 사서교사 724명, 정규직 사서직원35명과 비정규직 사서직원 4,391명, 합 5,150명을 기준으로 사서교사 등이 3,947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원된다고 하였을 때 5년에 걸쳐 1조 2,66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3. 2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제18대 제300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976호)』을 제안하였다.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

10) 이찬열 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676호),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1. 26.

1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의 제출 범위)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함.

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명시하자는 것이었다. 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3항, 제5조, 제11조 ①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명시하자는 것이었으나 소관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2)</sup>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라든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유아교육법』 제3조의2제5항, 『학교보건법』 제2조제3항제나호 및 동법제6조제3항등에도 특별자치시가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을 명시하여 “특별자치시” 용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4. 3차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6일 이찬열 의원 등 20명은 제19대 제311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sup>13)</sup>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976호)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학교도서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배치에 관한 내용을 현행 임의규정 방식에서 강제규정 방식으로 개정하되, 학교 규모별 자격 유형 및 배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다음 <표 2>와 같이 이찬열의원이 2011년에 제안한 법률안보다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4)</sup>

12) 이명수 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976호),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5. 25.

13) 국회법 개정(2013. 3. 23 시행)으로 소관위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

14) 이찬열,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976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 9. 26.





점에서 예상하여 비용을 추계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진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 6,000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때 매년 1,300~1,600억원의 교육재정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 Ⅲ.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기본시설로서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학교도서관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 내용의 부족과 해석에 애매함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학교도서관이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이 양산되었음은 물론 법에 전문인력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서실무사 등으로 불리는 사서무자격자도 배치되어 학교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학교도서관진흥법』의 법적 위상에서부터 법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법적 위상과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소관위원회에 제안된 2004년도에 학교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6906호)』이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690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학교도서관의 사서직원과 배치에 관한 시행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본시설로 기능하기에 그 규정이 미흡한 것이었다. 당시 학교도서관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일부개정할 것인가, 단일법으로 제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임에 반하여 학교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할업무에 속하였다. 그리고 이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도서관 수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학교도서관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단일법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다.

16) 미첨부 이유 설명. 이찬열 의원실 황현정 비서.

단일법으로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우선적 지위를 갖는 특별법으로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전반에 관하여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법」<sup>17)</sup>과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동일한 법률용어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다음 <표 3>을 보면 기본법인 「도서관법」과 특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내용에 통일성이 없어 법률에 혼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의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률용어는 기본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이중 직원배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규정이며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사항임으로 뒤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표 3>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법의 조문의 차이

	학교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정의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설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인력배치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2. 업무 주체

업무(業務)란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을 말한다.<sup>18)</sup> 일이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을 말한다.<sup>19)</sup> 따라서 업무란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업무의 주체는 사람이다.

1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전부개정되어 「도서관법」.

18) 업무(業務). <<http://dic.naver.com>.> [인용 2013. 8. 1].

19) 일. <<http://dic.naver.com>.> [인용 2013. 8. 1].

『도서관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학교도서관의 업무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6장 학교도서관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노인·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업무의 정의를 보았듯이 행위의 주체는 시설물이 아닌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법』 제2조제6항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항에서 학교도서관이 정의된 것처럼 도서관이나 도서실이 동법들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4항<sup>20)</sup>에는 ‘사서교사란 ...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4항<sup>21)</sup>에 학교의 장이 학교도서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동법 내에서도 업무와 업무의 주체를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도 ‘학교’, ‘보건실’, ‘급식실’ 등과 같은 시설물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법들은 인간이라는 주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에 있어 필요한 수단으로 시설물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설물을 통

20)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1)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그 시설물을 책임지고 있고 경영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책임의 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 바뀌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기본시설이고 학교교육과정 등에 관한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는 만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에서 학교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부분을 학교의 장으로 수정함이 옳을 것이다. 또한 동법 제2조에 정의된 사서교사도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한다. 사서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직무를 통해 규정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는 학교의 장이 수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 3. 전문인력 배치

위에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기술된 동일한 법률용어와 내용에 대한 법조문이 달라 법률에 혼란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이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에도 사서교사 등의 배치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한 『도서관법』에 명시된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의무배치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사서교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러한 개정을 통해 『도서관법』과의 법률적 일관성도 유지시켜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2007.4.5.][법률 제8029호]

제6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08.6.15] [법률 제8677호, 2007.12.14, 제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학교도서관진흥법』과 기본법인 『도서관법』에 기술된 동일한 법률용어와 내용에 대한 법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교사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 가. 사서교사 미 배치 문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임의조항이라는 것이다. 위 조항에 사서와 교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서교사가 현장에 배치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동법과 동법시행령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자격과 직위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정원과 배치기준, 업무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sup>22)</sup> 및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sup>23)</sup>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sup>24)</sup>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중을 위배되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전문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학교도서관 현장에 상당수의 비정규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실기교사와 사서의 배치에 관한 규정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사서교사, 실기교사, 그리고 사서의 직위가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윤의원이 2004년에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12조제2항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학교사서 중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시 이 법안을 검토 보고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 제12조제2항이 법안 제정의 취지에 타당하나 조직, 정원,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고,<sup>25)</sup>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기본법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법조항에 대해서 전체 법률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서관및독서진흥법』조항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sup>26)</sup>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2항을 “사서교사·실기교사 또는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로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소관위를 통과하게 된다.

22)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3) 교육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4)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25) 류충현, 학교도서관진흥법안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11. 22.,

26)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김재윤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5. 2. 정리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사서직원 등의 배치가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사서교사는 배치되지 않고 비정규직 사서<sup>27)</sup>가 급격히 배치되게 되게 된다.

<표 4> 2002-2011년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배치 현황<sup>28)</sup>

연 도	전담인력(명)			
	사서교사	사서직원		누계
		정규직 사서	비정규직 사서	
2002	164	20	880	1,064
2003	232	39	1,135	1,406
2004	284	46	1,685	2,015
2005	313	57	1,881	2,251
2006	424	60	2,716	3,200
2007	537	62	2,552	3,151
2008	625	55	2,858	3,538
2009	699	34	4,281	5,014
2010	724	35	4,391	5,150
2011	704	38	4,634	5,376

주: 정규 사서직원은 사서직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도서관으로 배치된 자임. 법제12조 제2항의 '사서교사 등'에는 사서교사와 정규직 사서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로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학교도서관 자체는 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은 사서교사<sup>29)</sup>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 지원을 통해 수업방법의 개선을 돕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돕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 ②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를 둔다.”라는 내용의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

27)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무기계약직 사서와 2년 이내의 계약직 사서를 모두 포함하여 비정규직 사서라고 하겠음.

28)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팀이 작성한 이찬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76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와 교육과학기술위 임진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이찬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1984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

29) 사서교사는 사서자격증과 교원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생 교육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직위를 가지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으로서 교육자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④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는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다. 이 조항에 사서교사의 직무까지 포함시킨다면 “학교도서관에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그리고 교직원의 독서문화 진흥<sup>30)</sup>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를 둔다.”로 개정됨이 옳을 것이다.

위의 <표 4>와 같이 2012년 4월 1일 기준으로 비정규직 사서가 4,634명이나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서는 도서관법과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서자격증<sup>31)</sup>을 가지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도서관운영’의 전문가이다. 이러한 전문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이며, 학교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 사서를 현재와 같이 유지시키는 것이다. 앞서 전문가인 사서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재 관련법<sup>32)</sup>을 통해 비정규직 사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서가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 되었어도 사서교사와 비교하면 그 처우가 열악하다. 사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가임으로 그에 맞는 직위와 직무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논의에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를 정규직 사서로 전환시켜 정규직 사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서가 모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서가 재계약을 통해 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서로서의 자긍심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긴다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활동의 시설물로서의 기능에 제한을 주게 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서의 자격과 직급<sup>33)</sup>만으로는 학교에서 직접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사서가 단독으로 근무하지 않고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한다면 이 방법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을 단위학교에서 사서교사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방법

30)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제1항, 동법 제15조(독서교육 등)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제2항1호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독서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1항에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31)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사서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사서는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구분되어 있다.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제4조제2항

33) 사서교사의 직위는 교사(사서)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교육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사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만 그 역할이 기술되어 있어 업무와 역할에 제한이 있음.

은 공무원의 신분인 사서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갖는 다는 의미로 관련 법을 수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만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서교사 자격 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시키면서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방법으로 관계부처의 협의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방법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의 배치가 의무규정으로 바뀐다면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과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됨으로 이 방법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겠다.

위 네 가지 방법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네 번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쉽지 않으며,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교원임용 선발 시험이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이처럼 사서가 사서교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사서교사 자격제도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자질과 능력있는 사서들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더불어 매년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사서의 처우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규정으로 하며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를 규정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나. 사서직원 명칭과 사서 무자격자의 배치

『학교도서관진흥법』이 2007년 12월에 제정될 때 당시 『도서관법』제6조제1항은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용어 대한 통일성을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을 심사하는 소관위 회의에서도 기본법인 도서관법의 법률용어와의 통일성을 위해 “학교사서”를 “사서직원”으로 바꾼다. 소관위에 참여한 이들은 비정규직 사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도서관법에 명기된 사서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품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sup>34)</sup>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전문위원, 정부측 참석자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기되는 사서직원을 ‘사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도 비정규직 사서도 아닌 사서 무자격자도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이 조문이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두지 않아도 되는

34) 제269회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법안심사소위원회) 2007. 9. 13., 교육위원회소회의실 참고



상황이기에 사서 무자격자를 두어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는 사서직원이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서 외에도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직원도 사서직원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로 해석됨으로서 수반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시설로서 제 역할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사서 무자격자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버린다. 사서 무자격자의 배치가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에 학교도서관법과 2012년 8월에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서직원’을 ‘사서’로 개정한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 이미 일부 학교도서관 현장에는 사서 무자격자인 사서직원이 배치되었다. 2011년 9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사서 무자격자를 ‘사서실무사’<sup>35)</sup>라는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는 명칭을 만들고 2012년도 교직원업무경감종합계획<sup>36)</sup>을 추진하면서 사서실무사에게 사서는 물론 사서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당부분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무분별한 명칭의 사용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서교사와 사서들이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서 무자격자의 등장으로 학교도서관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도서관법』은 사서직원을 사서로 개정하였고 동법 부칙에 의해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도 사서직원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 위 사례는 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여 도서관법을 개정한 소관부처의 신속한 대응은 칭찬할만한 일이나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사서직원’을 ‘사서’로의 개정하였어도 현장에서의 그 영향력이 미비하였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의 첫 번째로의 의미해석 때문이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한 국회의원이나 전문위원, 정부추 참석자도 학교도서관에는 적어도 사서는 근무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법안을 수정하였다<sup>37)</sup>. 그러나 현장에 사서 무자격자도 근무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결국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업무범위 구분의 문제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 ②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앞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전문인력은 사서교사이고 사서는 학교도서관운영에 있어 전문가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실기교사

35)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지원과, 2011년도 비정규직 직종별 명칭 개선 계획, 2011. 8. 30.

36)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년도 교직원업무경감종합계획’, 2012. 1. 6.을 보면 사서실무사(사서무자격자)의 업무내용을 예시로 “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기안 및 공문처리, 도서관운영·관리(자료·비품구입 및 정리, 도서열람대출 반납 등), 권장도서선정위원회구성, 학부모독서회운영 및 지원, 독서교육행사추진, 도서관활용수업지원, 교과서관련업무, 독서우수아표창, 도서관이용 및 독서지도(독서동아리) 등, 소액지출, 징수품의, 기타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37) 제269회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법안심사소위원회) 2007. 9. 13., 교육위원회소회의실 참고

의 법적 위상을 알아보고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의 역할 구분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실기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제2항에서 교사의 자격기준<sup>38)</sup>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과 관련한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 사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살려 학교도서관진흥법에도 실기교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에 실기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기교사(사서)<sup>39)</sup>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교원의 자격을 갖는다. 교원신분인 실기교사는 동법 제20조 제4항에 의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보았을 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자격과 교원의 자격이 모두 필요하다. 앞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은 사서교사라고 하였고 사서교사는 사서의 자격과 교원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실기교사는 왜 필요한 것인가. 실기교사<sup>40)</sup>는 전문대학교 도서관과에서 도서분류실습과 도서목록실습을 포함한 5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이수하고 교직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해야 주어지는 자격임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을 통해 준사서의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현실과 학교도서관 규모에 따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감안하였을 때 실기교사(사서)는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사서는 자격이 다르다. 특히 사서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와는 다르게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필요한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서가 단위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수업<sup>41)</sup>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실기교사(사서)의 직위로도 교사<sup>42)</sup>들과 협동수업을 하거나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는 자격과 직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무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에 따른 직위와 직위에 따른 업무가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은 「학교도서관진흥법」<sup>43)</sup>은 문제가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38)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교사 자격 기준 별표2 실기교사 자격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란(欄)에서 같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實科系)의 기능을 마친 사람,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마친 사람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9) 다른 표시과목의 실기교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실기교사(사서)라고 표기함

40)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교사 자격 기준 별표2와 교육인적자원부의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고

41) 법정 최저수업시수에 포함되는 수업으로 방과후 수업은 제외

42) 정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

43)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③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①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

12조③에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규모와 자격 유형을 포함하여 위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7조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5〉 자격별 이수학점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sup>44)</sup>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sup>45)</sup>
구분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정사서(2급)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해당 없음

〈표 6〉 자격별 이수과목

구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사서교사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전산학,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론, 정보매체론
실기교사(사서)	도서분류실습과 도서목록실습
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정보자료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II), 저작권론(II)

#### 라. 사서교사의 정원과 보정지수의 현실화 문제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자격에 따른 업무구분 없이 사서교사 등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학교에 둘 수 있다고 하였다. 사서교사 등을 자격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여 배치하더라도 학생 1,500명당은 학교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너무나 높은 기준이며 보건교사, 영영교사나 공공도서관 사서의 배치기준과도 차이가 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에 대한 정원에 대한 구분은 물론 업무에 대한 구분도 없음을 알 수 있다.

44) 교육인적자원부, 2013년도 교원자격 검정 실무편람, 2013.

45)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시행 2012. 8. 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28호, 2012. 8. 31, 일부개정]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3. 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개정 2009.2.6>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8.13>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sup>46)</sup>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에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012년 4월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98%<sup>47)</sup>에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급에 대한 기준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으로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생 수로 정하기보다는 보건교사의 배치기준과 같이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도 사서교사의 정원과 관련된

46) 구분에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만 표시함

47)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2012). 2012 한국도서관연감과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의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함. 2012. 4. 1. 기준으로 전체 초중등학교수 11,696개(분관, 학교도서관수 11,506개관, 사서교사 689명, 비정규직사서 4,134명을 기준으로 함.

한 법률로는「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 동법 제2조제2항과 관련한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에 사서교사의 정원이 519 명임을 알 수 있다.<sup>48)</sup> 초중고등학교중 공립학교가 9,645개<sup>49)</sup>임을 감안할 때 사서교사가 5.38%로 배치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5호와 관련한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sup>50)</sup>에 사서교사의 배정기준이 규정되고 있다. 이 배치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보정지수<sup>51)</sup>가 조정되어 시·도 지역군별 사서교사 1인당 학생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서교사의 정원도 현실에 맞게 증가시켜야 하며 사서교사의 정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학급단위로 변경시켜야 한다.<sup>52)</sup>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배치기준을 ‘사서교사 등’으로 하지 않고 사서교사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사서교사의 지역군 및 보정지수<sup>53)</sup>

구분	1지역군	2지역군	3지역군	4지역군	5지역군
시도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세종	강원, 전남, 경북
보정지수	+4,000	+2,000	-2,000	-3,000	-4,000

#### 4. 내용과 범위 설정

학교도서관은 시설물이며 학교도서관의 업무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행위의 주체와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위의 주체인 사서교사나 사서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었을 때 논의되어야 할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목적에 학교도서관 이용자이며 학교도서관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

48)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83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2조(정원) ②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49) 교육통계서비스(<http://std.chedu.go.kr/>)

50)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 5호 관련)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배정기준이 나와 있음

51) 매년 교육부장관이 사서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군별로 보정한 지수

52) 여기에서 학급의 학생 수가 일정치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53)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3년 6월에 정보공개된 내용임.

는 ‘학생<sup>54)</sup>’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에서의 목적은 그 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방향을 기술한 것으로서 이용대상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2011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976호)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적용시켜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률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학교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학교도서관이 진흥됨으로서 수혜받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인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위생 및 안전관리,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등을 조항으로 추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중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독서문화진흥법과 연계하여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실무사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명칭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IV. 결 론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기본시설로서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가 규정되었으며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동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 주체와 수단의 혼동, 사서교사의 배치와 정원확보, 내용과 범위설정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될 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고찰된 문제점을 통해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 그리고 교직원의 독서문화 진흥<sup>55)</sup>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를 둔다.”와 같이 개정한다.

둘째, 자격에 따른 정원, 배치기준,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개정한다.

셋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학교도서관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학교

54) 학교보건법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급식법에는 학생과 국민이 목적에 명시되어 있음.

55)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동법 제15조(독서교육 등)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②항 1호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서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독서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1항에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장은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주체로 기술된 부분을 학교장을 주체로 기술한다.

넷째, 목적과 책무에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독서활동을 돕고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개정한다.

다섯째, 사서교사의 업무인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위생 및 안전,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서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학교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학습과 교육이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학교도서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수행되는 교육활동의 질은 사서교사의 질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에는 관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많은 위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자가 필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진흥되고 이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인용 2013. 5. 1].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 1994. 7. 25] [법률 제4746호, 1994. 3. 24, 제정][폐지]
- 도서관법.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0호, 2012. 2. 17, 일부개정]
- 송기호. “사서교사 자격 제도 및 직무에 대한 반성적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3권, 제4호 (2012), pp.161-180.
- 송기호. 학교도서관운영의 실제. 개정3판. 한국도서관협회, 2008.
- 이병기. “한국과 미국의 사서교사 임용 및 자격시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11), pp.127-149.
- 학교도서관 지침(The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 2002).  
<<http://www.ifla.org/publications/the-iflaunesco-school-library-guidelines-2002>>  
[cited. 2013. 9. 3]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AASL(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10. *Position Statement on Instructional Classification*. 2010. <<http://www.ala.org/>>

ASLA(Australi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Policy Statement - School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sla.org.au/policy/bill-of-rights.aspx>> [cited 2013. 9. 3].

ASLA(Australian School Library Association). *Joint Statement on School Libraries and Teacher Librarians*. <<http://www.asla.org.au/policy/Joint-statement.aspx>> [cited 2013. 9. 3].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www.law.go.kr/main.html>> [cited 2013. 5. 1].

Lee, Byeong-Ki. "A Comparative Analysis Teachers' Certification and Recruitment Examination System in the Korea and U.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2(2011), pp.127-149.

*Libraries Law*. [enforcement 2012. 8. 18] [law 제11310호, 2012. 2. 17].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enforcement 1994.7.25] [law 제4746호, 1994. 3. 24][Repealed]

*School Libraries Promotion Act*. [enforcement 2013. 3. 23.] [law 제11690호, 2013. 3. 23].

Song, Gi-Ho. "A Reflective Inquir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Jobs for the Teacher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3, No.4(2012), pp.161-180.

Song, Gi-Ho. *School Library Management*. 3rd ed. KLA, 2008.